

가입금 및 회비납부에 관한 규정

개정 1991.10.31

" 1994.11.21

" 2004.01.30

" 2008.02.22

" 2010.01.29

" 2013.05.30

제 1조(목적)

① 이 규정은 정관 제5조~제8조, 제10조, 제13조, 제24조 제8호,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가입 및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회원가입)

- ① 협회 회원으로 신규 가입을 할 때에는 2부의 가입원서와 가입금 및 당년 회비를 동시에 납입함으로써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.
- ② 전항의 신규 회원 가입 절차는 지회와 협회에서 업무를 관장한다.
- ③ 제1항의 가입금은 총회에서 부과하는 기준에 의한다.
- ④ 제1항의 가입원서 중 1부는 지회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협회에 비치하여 수납 가입금은 당기 일반회계에 귀속된다.

제 3조(회비구분 및 부과)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 부과기준에 의하며 회비 구분은 다음과 같다.

1. 연례회비 : 회원이 가입한 날로부터 의무적으로 해마다 납부하는 회비
2. 특별회비 : 회원이 협회의 사업에 찬동하여 수시로 납부하는 회비

제 4조(연례회비 납부기한) 회원의 연례회비 납부기한은 협회 회계연도 이내에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5조(회비 미납자에 대한 정권 및 복권)

① 제3조 1호의 연례회비는 제4조에서 정하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 그 납입이 있을 때까지 또는 다음 각 호의 복권이 될 때까지 회원의 각종 권리를 유보한다.

② 전항에 의한 정권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복권시킨다.

1. 경과연도 연회비 미납자 : 납부 즉시복권

단, 정관 제2장 11조 5항에 해당자는 임원, 지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(임원,지회장 자격제한)에 적용 받는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